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투자지구로 지정 가능하며, 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함

3)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 등이 입지하고자 하는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화를 촉진

나.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하여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투자계약 체결을 규정
(안 제29조의9 신설)

- 1)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 등은 관리주체와 투자계약 체결이 필요
- 2)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은 5년 내 투자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단,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 기간 추가 부여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투자계약 해지 가능
- 3) 투자계약 체결·이행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입주에 따른 지원이 가능

다. 첨단투자지구 변경 및 해제 등(안 제29조의10 신설)

- 1)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된 이후 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지구 지정 해제 및 일부 변경 사유 발생에 따른 변경에 대한 절차 규정 필요
- 2)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변경 및 해제 가능. 다만, 기존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 가능

1. 의결주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첨단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1.6월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을 위한 세부 내용 규정(안 제29조의8 신설)

- 1) 개정 법률에서 첨단투자지구 지정 대상 지역, 지정기준 및 요건,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
- 2)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 및 첨단기술 관련 지역, 업종별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인원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지역에 지정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입주대상 업종, 관리주체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입주수요·조성면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 1 -

- 첨단투자지구가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에 고시
- 3) 지구 지정 해제 및 변경에 대한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지구 지정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

라.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안 제29조의11 신설)

- 1) 첨단투자지구 입주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해당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
- 2) 관리주체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첨단투자를 하는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협력업체 등)으로 규정
- 3)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그 기업의 공정단축 등을 위해 입주 필요성이 인정된 협력업체 등을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가능 대상을 명확화

마.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제29조의12 신설)

- 1) 개정 법률에서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감면 절차 및 사용료율·대부료율 등을 구체화할 필요
- 2)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대부료는 1%를 기본으로 하되, 투자계약을 이행하기 전에는 5%를 적용, 이행이 완료된

후에 그 차액을 환급(다만,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조례로 정함)

- 3)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이 가능하여, 첨단투자에 따른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 기대

바. 첨단투자지구 부지 매입(안 제29조의13 신설)

- 1) 첨단투자지구 임대를 위한 사전 절차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매입을 분담하도록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분담비율 등을 구체화할 필요
- 2) 수도권의 경우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 비수도권의 경우는 국가가 60%,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분담하도록 규정
- 3)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사.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업무 및 구성(안 제29조의14 신설)

- 1) 개정 법률에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구성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 해당 내용 규정 필요
- 2) 위원회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 부처차관 및 정부직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3)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운영의 객관성·전문성 확보에 기대

아. 규제개선 신청 등(안 제29조의15 신설)

- 1) 개정 법률에서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해당 내용 구체화 필요
- 2) 위원회는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실행가능성, 첨단투자 관련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 해당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
- 3) 입주기업체 등이 신청한 규제 관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정비 착수·완료 등을 통보토록 함으로써 규제개선 진행 경과 등을 신속 파악

자. 입주기준 등(안 제48조의2)

- 1)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체결 시 사전에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필요
- 2)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자로써, 첨단투자로의 확인 등 입주 자격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고 규정을 미적용토록 규정
- 3) 공고 규정 미적용으로 신속한 첨단투자 및 첨단투자지구 입주에 기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6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제1호의2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12.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1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
1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18.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을 인

- 8 -

- 설의 신설·증설이나 기존 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사업과 관련된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나. 상시 근로자 수 4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해당 지역, 업종 및 투자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③ 법 제22조의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입주대상 업종,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 및 투자 유치 현황
 - 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다.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 라. 개발사업의 시행자
 -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바. 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정하는

- 10 -

-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② 법 제22조의6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다만, 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설·증설이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 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설·증설이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나. 상시 근로자 수 8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개발시

- 9 -

-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해당 지역의 개발 및 지구 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 가.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내역·계획,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자원조달계획
- 나. 가목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하 “협력업체 등”이라 한다)이 제29조의8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 입주 필요성이 있어 협력업체 등의 입주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경우, 협력업체 등의 사업내용, 가목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협력 내용 및 입주 필요성, 입주 면적
- 다. 관리주체
- 라.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 마. 개발사업의 시행자
- 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사. 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기간
- 아.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자.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

- 11 -

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입주자격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법 제2조 제8의3호에 따른 첨단투자를 위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설·증설 등의 입주자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업체 등이 전문의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입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6 제1항제1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가. 신규 지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요건을 갖출 것

- 1) 개발 및 지구 조성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
- 2) 조성면적이 50,000㎡ 이상일 것
- 3) 입주수요가 확인된 면적이 지구 지정 신청 면적 대비 100분의 60이상일 것

나. 기존 지구를 확장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요건을 갖출 것

- 1) 기존 지구 면적 대비 100분의 80 이상 입주하였을 것
- 2) 확장 대상 지구에 대한 개발 및 조성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

- 12 -

2. 첨단투자지구 지정목적

3. 첨단투자지구의 개발 또는 발전방안 및 관리 방법

4. 첨단투자지구 개발기간(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첨단투자 지구에 한한다.)

5. 주요 유치업종 및 입주자격(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첨단투자 지구에 한한다.)

6. 관련 지형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7.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⑩ 법 제22조의6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와의 투자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2. 첨단투자지구 내 국·공유지의 임대

3. 사용료·대부료의 부과 통지 및 징수, 관리, 정산(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내 토지 등을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첨단투자 및 투자계약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확인

5.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및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주체와 공단과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제29조의9(투자계약의 체결) ① 법 제22조의6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단

3) 입주수요가 추가로 확인된 면적이 확장을 신청한 면적 대비 100분의 60 이상일 것

2. 법 제22조의6 제1항제2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제29조의8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첨단투자지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6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치 대상 첨단투자의 실행가능성, 고용증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개발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 및 관련 시·도지사, 첨단투자지구 내 기업 등(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절차와 방법은 「관보규정」 제4조에서 제10조에 따른다.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유형·위치 및 면적

- 13 -

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는 관리주체와 그 투자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투자계약은 제29조의8제2항의 기준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투자계약의 체결시기와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계약을 체결한 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계약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내에서 첨단투자를 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 시설 등의 신설·증설·추가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첨단투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임대받은 부지·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14 -

- 15 -

5.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사용료·대부료를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법률 위반 또는 투자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 등으로 투자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인정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① 법 제2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6 제1항 제1호의 지역에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법 제22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의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제29조의9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제29조의8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3. 첨단투자규모의 증액 또는 최초 예정된 투자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감액 변경(변경 이후에도 법 제22조의6제3항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 고용규모의 최초 예정된 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변경 이후에도 법 제22조의6 제3항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6.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사업내용의 변경(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하며, 변경된 사업내용도 법 제8의3에 따른 첨단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첨단투자지구가 변경 및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 및 관련 시·도지사, 입주기업체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첨단투자지구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9조의8제3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
 2. 첨단투자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전 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동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7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법 제22조의6 제1항 제2호의 지역의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제29조의9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및 입주기업체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변경
2. 최초 지정된 첨단투자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변경 이후에도 법 제22조의6 제3항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나.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해제 사유

다.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⑧ 법 제22조의6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의7 제2항에 따라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지구 내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과의 제29조의9 제1항에 따른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29조의11(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2조의8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9조의8 제2항의 기준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입주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관리주체와 제2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다만, 법 제38조 또는 제29조의8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등은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2. 제29조의8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협력업체 등
 3.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 ② 그 밖에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12(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① 법 제22조의8제

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투자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 요율을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계획에 따른 투자 이행의 완료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역산하여 차액을 환급한다.

② 투자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이후의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50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사용료·대부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신청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의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8 제5항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정산 및 투자계약의 이행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 부지 매입 등) ① 법 제22조의8 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부지 매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② 전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지 매입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는 100분의 30은 국가가,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경우는 100분의 60은 국가가,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이 이미 적용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첨단투자지구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분담비율을 따른다. 다만, 해당 법률에 매입 분담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③ 부지매입시 계약금은 제2항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며,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법 제22조의6 제1항 제1호의 경우 입주기업체의 입주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법 제22조의6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약정일자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의14(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의 업무 및 구성 등) ① 첨단투자지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투자지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첨단투자지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법에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7.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정부직 공무원
2. 규제개혁, 첨단투자,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첨단투자지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부위원장 또는 차장, 시·도지사 등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

장이 참석을 요청한 사람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대면 또는 서면으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첨단투자지구위원회 회의는 참석 가능한 위원정족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2. 첨단투자지구 지정 후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청한 규제개선에 관한 실무적 사항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규제개혁, 첨단투자,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첨단투자지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참석을 요청한 사람
-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15(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법 제22조의 10 제4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 신청내용과 첨단투자 관련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10 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

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의6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자로서, 제29조의8 제2항의 기준 또는 제29조의8제4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6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제1호의2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12.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1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

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

1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18.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법 제22조의6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정보

통신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다만, 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설·증설이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설·증설이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나. 상시 근로자 수 8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개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기존 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사업과 관련된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나. 상시 근로자 수 4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해당 지역, 업종 및 투자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③ 법 제22조의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주대상 업종,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 및 투자유치 현황

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라. 개발사업의 시행자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바. 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해당 지역의 개발 및 지구 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내역·계획,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재원조달계획
나. 가목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하 “협력업체 등”이라 한다)이 제29조의8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 입주 필요성이 있어 협력업체 등의 입주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경우, 협력업체 등의 사업내용, 가목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협력 내용 및 입주 필요성, 입주 면적
다. 관리주체
라.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마. 개발사업의 시행자
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사. 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기간
아.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자.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입주자격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법 제2조 제8의3호에 따른 첨단투자를 위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설·증설 등의 입주자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업체 등이 전문의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입주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6 제1항제1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가. 신규 지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요건을 갖추는 것
 1) 개발 및 지구 조성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
 2) 조성면적이 50,000㎡ 이상일 것
 3) 입주수요가 확인된 면적이 지구 지정 신청 면적 대비 100분의 60이상일

것
나. 기존 지구를 확장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요건을 갖추는 것
 1) 기존 지구 면적 대비 100분의 80 이상 입주하였을 것
 2) 확장 대상 지구에 대한 개발 및 조성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
 3) 입주수요가 추가로 확인된 면적이 확장을 신청한 면적 대비 100분의 60 이상일 것
 2. 법 제22조의6 제1항제2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제29조의8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첨단투자지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2조의6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치 대상 첨단투자의 실행가능성, 고용증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개발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2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 및 관련 시·도지사, 첨단투자지구 내 기업 등(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절차와 방법은 「관보규정」 제4조에서 제10조에 따른다.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유형

· 위치 및 면적

2. 첨단투자지구 지정목적

3. 첨단투자지구의 개발 또는 발전방안 및 관리 방법

4. 첨단투자지구 개발기간(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한한다.)

5. 주요 유치업종 및 입주자격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한한다.)

6. 관련 지형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7.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⑩ 법 제22조의6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와의 투자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2. 첨단투자지구 내 국·공유지의 임대

<신 설>

3. 사용료·대부료의 부과 통지 및 징수, 관리, 정산(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내 토지 등을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첨단투자 및 투자계약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확인

5.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및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주체와 공단과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제29조의9(투자계약의 체결) ① 법 제22조의6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는 관리주체와 그 투자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투자계약은 제29조의8제2항의 기준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투자계약의 체결시기와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계약을 체결한 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계약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내에서 첨단투자를 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 시설 등의 신설·증설·추가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첨단투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임대받은 부지·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사용료·대부료를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법률 위반 또는 투자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 등으로 투자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① 법 제2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6 제1항 제1호의 지역에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법 제22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의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제29조의9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제29조의8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② 전 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동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7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법 제22조의6 제1항 제2호의 지역의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제29조의9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및 입주기업체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변경

2. 최초 지정된 첨단투자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변경 이후에도 법 제22조의6 제3항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첨단투자규모의 증액 또는 최초 예정된 투자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감액 변경(변경 이후에도 법 제22조의6제3항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 고용규모의 최초 예정된 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변경 이후에도 법 제22조의6제3항의 침

	단투자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6.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사업내용의 변경(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하며, 변경된 사업내용도 법 제8의3에 따른 첨단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첨단투자지구가 변경 및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 및 관련 시·도지사, 입주기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첨단투자지구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9조의8제3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 2. 첨단투자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나.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해제 사유 다.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⑧ 법 제22조의6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의7 제2항에 따라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지구 내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과의 제29조의9 제1항에 따른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29조의11(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2조의8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9조의8 제2항의 기준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신 설>		<신 설>	

	입주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관리주체와 제2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다만, 법 제38조 또는 제29조의8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등은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2. 제29조의8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협력업체 등 3.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② 그 밖에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12(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①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투자계획 이행을 완		료하기 전까지는 그 요율을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계획에 따른 투자 이행의 완료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역산하여 차액을 환급한다. ② 투자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이후의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50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사용료·대부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신 설>		<신 설>	

<신 설>	을 신청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의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 8 제5항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정산 및 투자계약의 이행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 부지 매입 등) ① 법 제22조의8 제6항에 따라 입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부지 매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② 전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지 매입분담비율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는 100분의 30은 국가가,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경우는 100분의 60은 국가가,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이 이미 적용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분담비율을 따른다. 다만, 해당 법률에 매입 분담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③ 부지매입시 계약금은 제2항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며,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법 제22조의6 제1항 제1호의 경우 입주기업체의 입주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법 제22조의6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약정일자에 따라
--------------------	--	---

<신 설>	지급한다. 제29조의14(첨단투자지구위원회 등의 업무 및 구성 등) ①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투자지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첨단투자지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법에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7.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정무직 공무원 2. 규제개혁, 첨단투자,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첨단투자지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부위원장 또는 차장, 시·도지사 등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을 요청한 사람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대면 또는 서면으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
--------------------	---	---

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첨단투자지구위원회 회의는 참석 가능한 위원정족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2. 첨단투자지구 지정 후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청한 규제개선에 관한 실무적 사항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규제개혁, 첨단투자,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첨단투자지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참석을 요청한 사람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정

<신 설>

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15(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법 제22조의10 제4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 신청내용과 첨단투자 관련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10 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1. 2.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①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2조의6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자로서, 제29조의8 제2항의 기준 또는 제29조의8제4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연 락 처	(044) 203 - 4082